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63
----------	-------

발의연월일 : 2026. 4. 15.

발 의 자 : 배준영 · 김석기 · 김용태
서명옥 · 한지아 · 이상희
송석준 · 엄태영 · 김승수
최보운 · 이종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리튬 · 니켈 · 코발트 · 희토류 등 전략광물은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무기 등 국가 핵심 산업 및 안보에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국가의 경제 · 산업 · 안보 등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주요국의 수출통제 등 요인으로 그 공급망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전략광물의 수급 안정화에 필수적인 비축목표 · 비축기간 등 전략광물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전략광물의 해외개발 촉진을 위한 해외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광물 확보를 통한 수급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략광물 비축목표, 비축기간 등 전략광물 비축계획을 현행법

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 지원, 투자위험보증 및 손실지원,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광물개발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략광물 확보 추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6조의2,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 등).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른 핵심광물 중 국가의 경제·산업·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광물(이하 “전략광물”이라 한다)

11. “해외개발”이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12. “해외개발사업자”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전략광물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11. 전략광물의 비축목표 및 비축기간 설정에 관한 사항

12. 전략광물의 비상시 방출계획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의 보조·용자) ① 정부는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을 위한 조사에 드는 비용
2.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3.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에 따르는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위험보증기관(이하 “해외자원개발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및 개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3.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4.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

5. 그 밖에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용자받은 해외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용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의 보조 또는 용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조세에 대한 특례) ① 국가는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에 필요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4(투자위험보증사업) ① 정부는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투자위험보증기관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보증기관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의 한도 및 방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5(손실지원) ① 정부는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자가 해외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입은 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손실지원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전략광물의 비축계획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광물의 비축목표, 비축기간 등 전략광물의 비축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략광물비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략광물비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제 원자재 동향, 국내외 전략광물의 수급상황 변화, 비축자금 조성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전략광물비축계획에 따라 정해진 비축목표, 비축기간 등 전략광물의 비축에 관한 사항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전략광물비축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기금의 설치) 전략광물의 비축, 해외개발 및 재자원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전략광물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전략광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광물개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8조의3(기금의 재원) 기금은 정부 출연금, 특별회계 전입금, 투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8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지분투자
2.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
3. 전략광물의 긴급 비축 확대
4.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5. 그 밖의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비축 및 해외개발사업의 지원

제18조의5(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 ④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광물 비축계획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핵심자원의 비축계획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나. (생략)</p> <p><u><신설></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생략)</p> <p>2. ~ 10.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나.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나목에 따른 핵심광물 중 국가의 경제·산업·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광물(이하 “전략광물”이라 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라. (현행 다목과 같음)</p> <p>2. ~ 10. (현행과 같음)</p> <p>11. “해외개발”이란 「<u>해외자원개발사업법</u>」 제3조에 따른 <u>해외자원개발 방법</u>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p>

<신 설>

제6조(자원안보협회의 기능 및 구성) ① 자원안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자원안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9.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10. · 11. (생략)

② · ③ (생략)

<신 설>

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12. “해외개발사업자”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6조(자원안보협회의 기능 및 구성)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 전략광물 관련 정책의 심의 · 조정에 관한 사항

11. 전략광물의 비축목표 및 비축기간 설정에 관한 사항

12. 전략광물의 비상시 방출계획에 관한 사항

13. · 14.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의 보조·용자) ① 정부는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을 위한 조사에 드는 비용

2.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3.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에 따르는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위험보증기관(이하 “해외자원개발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을 수

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및
개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에 필
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
금

3.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을 수
행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4.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

5. 그 밖에 전략광물 해외개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금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
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략광물 해외개발
사업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신 설>

제13조의3(조세에 대한 특례) ①

국가는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
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
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
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략광물 확보를 위
한 해외투자에 필요한 세제지
원 확대를 위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4(투자위험보증사업) ①

정부는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
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
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
증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
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
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이
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투자위험보증기관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등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보증기관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의 한도 및 방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5(손실지원) ① 정부는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자가 해외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입은 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손실지원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전략광물의 비축계획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광물의 비축목표, 비축기간 등

전략광물의 비축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략광물비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략광물 비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제 원자재 동향, 국내외 전략광물의 수급상황 변화, 비축자금 조성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 기관,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전략광물비축계획에 따라 정해진 비축목표, 비축기간 등 전략광물의 비축에 관한 사항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전략광물비축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기금의 설치) 전략광물의 비축, 해외개발 및 재자원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전략광물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함으

<신 설>

<신 설>

로써 전략광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광물개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 설>

제18조의3(기금의 재원) 기금은 정부 출연금, 특별회계 전입금, 투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신 설>

제18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지분 투자
2.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
3. 전략광물의 긴급 비축 확대
4.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사업
5. 그 밖의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비축 및 해외개발사업의 지원

제18조의5(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④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